

개인통관고유부호,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

- 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
-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(1년) 도입, 직권 사용정지·해지 기능 등 신설
... 전산 시스템 개선 후 2026년부터 본격 도입

- 관세청은 **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**하기 위해 「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·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**개인통관고유부호**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,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**수입자를 특정**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**별도로 발급하는 부호**이다.
 -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,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**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**가 있다.
 -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**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**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,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**문제로 지적**되어 왔다.
- 이번 개정의 **주요 내용**은 ①유효기간 도입, ②직권 사용정지·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**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** 위한 사항들이다.
 - 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**유효기간(1년)**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**현행화**한다.
 -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**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**이 적용되며, 2026년 이전 발급자는 **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**로 설정된다.

-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,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.

②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.

③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, 국적,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.

□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,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·정보변경·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*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.

*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

□ 관세청 관계자는 “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,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”라며,

○ “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: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

담당 부서	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	책임자	과 장	노지선 (042-481-7840)
		담당자	서기관	류승하 (042-481-7852)

구 분	현 행	개정안
신청유형 및 유효기간	- 신규 - 변경(재발급, 정보변경) - 사용정지	- 신규(새로운 고유부호 발급): 신규발급일 기준 1년 - 정보변경(기존 고유부호의 정보변경): 변경승인일 기준 1년 - 갱신(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부호 재사용시):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1년 - 부호변경 재발급: 재발급일 기준 1년 - 사용정지(해제)(일시적 사용정지 또는 해제):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- 해지(고유부호 삭제)
사용정지	- 사용자의 신청	- 사용자의 신청 - 도용 등 확인시 부호관리자가 직권 사용정지 가능 ※ 직권 사용정지 시 다시 사용을 원할 경우 부호변경 재발급 필수
해지	-	-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동안 미갱신 - 사용자의 신청 ※ 다시 사용을 원할 경우 신규 발급 가능
신청서 서식	-	- 신청서 서식 영문 병기 - 성·이름 분리 - 영문명 추가 - 국적 추가 - 배송주소 20건 등록 가능 ※ 향후 검증강화 활용 예정
기타	-	-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는 총 연 5회(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횟수 미산입) -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0일 이내로 제한